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 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 교섭요구 건수 안정화, 안정적 교섭틀 내에서 원·하청 교섭절차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 교섭요구 및 교섭절차 진행 현황 >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되었다.

* 원청 사업장 기준 노동조합 2개: 144개소, 노동조합 3개 이상: 236개소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되었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교섭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로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4.2. 충남지노위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총 4개사 모두 교섭요구 사실 공고

(4.6. 경북지노위 결정) 한국산업단지공단 교섭요구 사실 공고

< 교섭단위 분리 결정 현황 >

한편, 4월 8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도 시작되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①직무별(▲은행-콜센터 직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②노동조합 상급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였으며, ③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SK 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하기도 하였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

현재는 법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로,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간 교섭절차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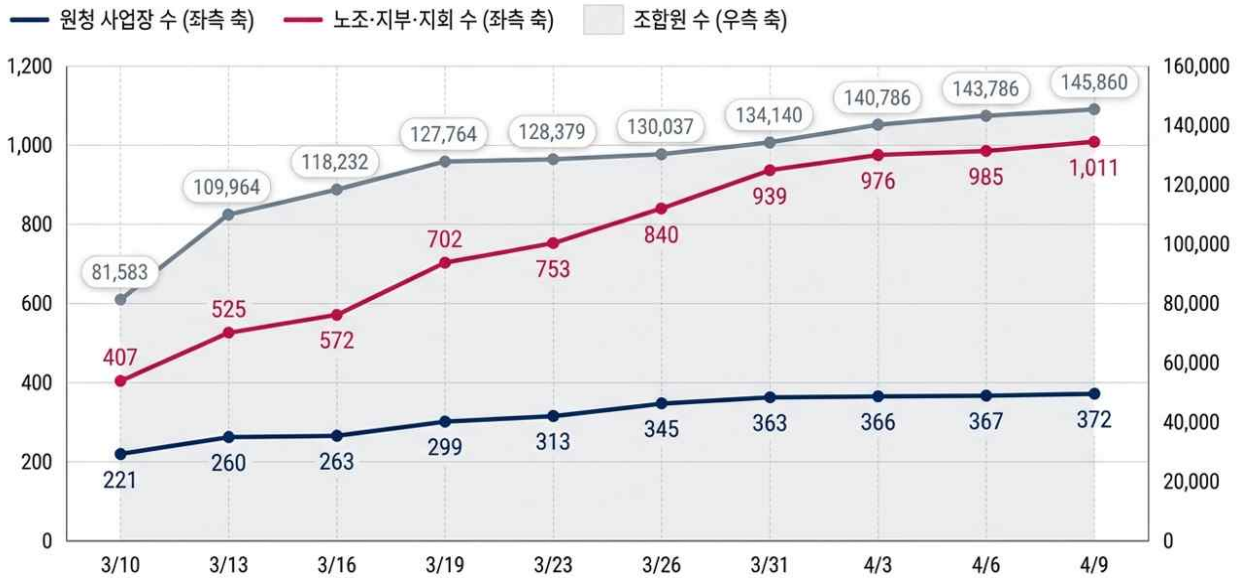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다.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승헌 (044-202-7611)
	노사관계법제과	담 당	서기관	유현경 (044-202-7609)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재운 (044-202-7372)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담 당	사무관	서관범 (044-202-7693)



1 한달 간 교섭요구 추이

□ 법 시행후 한 달 동안 일 단위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세 완화



2 교섭요구 현황

□ (총괄) 시행 한달(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총 14.6만명 교섭 요구

구분	원청 사업장	노조·지부·지회	소속 조합원수
총 계	372(100%)	1,011(100%)	145,860(100%)
공공 부문	156(41.9%)	395(39.1%)	71,360(48.9%)
민간 부문	216(58.1%)	616(60.9%)	74,500(51.1%)

□ (상급단체별) 원청 사업장 기준, 민주노총 47.7%, 한국노총 45.4%, 미가맹 7.0% 順

구분	원청 사업장	노조·지부·지회	소속 조합원수
총 계	752(100%)	1,011(100%)	145,860(100%)
민주노총	356(47.3%)	549(54.3%)	111,595(76.5%)
한국노총	344(45.7%)	382(37.8%)	24,615(16.9%)
미가맹	52(7.0%)	80(7.9%)	9,650(6.6%)

* 원청 사업장 기준 노동조합 2개: 144개소, 노동조합 3개 이상: 236개소

③ 교섭요구 사실 공고: 총 33건 공고

3.10~3.31	4.1~
27개소(기관)	6개소(기관)
▲ 한화오션 ▲ 부산교통공사 ▲ 포스코 ▲ 쿠팡CLS ▲ 화성시 ▲ 삼정건설 ▲ 보광종합건설 ▲ 덕진토건 ▲ 태권도진흥재단, ▲ 부강건설 ▲ 서진산업 ▲ 한동대학교 ▲ 흥한주택종합건설 ▲ HD현대중공업 ▲ SK인텔릭스 ▲ 모아주택산업 ▲ 성화종합건설 ▲ 대주중공업 ▲ 미래도건설 ▲ CJ대한통운 ▲ 인천광역시의료원 ▲ 롯데글로벌로지스 ▲ 로젠택배, ▲ 예수병원 ▲ 한진택배 ▲ HD현대삼호 ▲ 미진건설	▲ (4.2) 전주시 ▲ (4.3) 한국원자력연구원(4.2 인용결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4.2 인용결정) ▲ (4.6) 표준과학연구원(4.2 인용결정) ▲ (4.7) 한국자산관리공사(4.2 인용결정) 한국산업단지공단(4.6 인용결정)

④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총 54건 진행 중

접수 (a+b+c)	결정 (a)	인정	기각	각하	취하 (b)	진행중 (c)
170	6	6	0	0	110	54

- * (4.2) 원자력연구원·자산관리공사·표준과학연구원·자산관리공사 인용결정 → 신청노조 취하하여 “취하” 표기
 (4.6) 한국산업단지공단(인용결정), (4.7) 한국공항공사·인덕대학교·성공회대학교(인용결정)
 (4.9) 포스코이앤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용결정)

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총 19건 확정공고

확정공고 대상	확정공고	검토중	절차정지
	19	6	2
27	한화오션, 부산교통공사, 삼정건설, 화성시, 부강건설, 대주중공업, 한동대학교, SK인텔릭스, 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인천시의료원, 예수병원,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HD현대삼호, 로젠택배, 덕진토건, 흥한주택종합건설, 미진건설	보광종합건설, 태권도진흥재단 서진산업, 모아주택산업 성화종합건설, 미래도건설	포스코 쿠팡CLS

⇒ 4.9, 한동대학교,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첫 교섭(상견례)

- (경과) 3.10, 민 공공운수노조, 교섭요구 → 3.12, 한동대, 교섭요구사실 공고 → 3.20,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단수노조) → 4.9, 노사 상견례 개최
- (내용) 교섭의제 제출 일정 및 교섭주기에 대해 논의

5 교섭단위 분리 신청: 총 12건 진행 중

접수 (a+b+c)	결정 (a)				취하 (b)	진행중 (c)
		인정	기각	각하		
117	19	13	6	0	86	12

- * (4.8) 포스코 2건(인용결정)·인천국제공항공사(6건 인용결정, 2건 기각결정)
- (4.9) 한국전력공사·동희오토·하나은행·국민은행·국민카드(5건 인용결정)
 쿠팡로지스틱스·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4건 기각결정)

6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현황

- **(총괄) 총 94건 접수 및 45건 종결, 49건 처리중**
- **(종결: 45건)** ▲ 훈령에 따른 종결 41건, ▲ 회신 4건(종결예정 2건 포함)

유형별 종결 현황

- ① 위원회의 해석대상 아닌 질의 → 일반민원 변경안내·종결<12건>
- ② 질의쟁점 관련 사건 진행중(§12제1호) → 기타종결<6건>
- ③ 사실관계 불명확 및 판단지원 곤란(§12제2호) → 민원인 안내 및 일반민원 답변·종결<13건>
- ④ 질의자 질의 취소하거나 회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12제5호) → 취하종결<10건>
- ⑤ 해석요청 회신<4건> * 종결예정 2건 포함

- **(진행중: 49건)** ▲ 공공부문 46건*, ▲ 민간부문 3건

* (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 3건, ▲ 광역지자체 12건, ▲ 기초지자체 27건, ▲ 공공기관 4건